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위탁운영(2027~2028)

나. 예산액: 6,400백만원(VAT포함)

– (1년차) 3,200,000,000원(확정금액) / (2년차) 3,200,000,000원(추정금액)

다.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 (1년차) 2027.1.1. ~ 2027.12.31. / (2년차) 2028.1.1. ~ 2028.12.31.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 필요
- 본 사업은 우리나라 31개 무역항에 선박 입·출항, 화물 반출·입 등의 **항만민원 업무와 선박등록, 선원 승하선 공인 등 해운민원 업무를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따라서, 서비스를 연속으로 제공·운영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체결을 하고자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해양수산부장관 (인)

